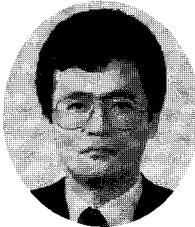


환경관계법 해설



金鐘敏

<환경처 법무담당관실>

I. 개설

1. 환경문제

인간사회의 안락한 생활의 영위나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는 생활에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의 제공 등 끊임없는 경제행위가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산업의 규모확대로 이어지고 자연자원의 개발을 수반하게 되어, 많은 적든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기 마련이다.

인류의 관심사로 등장한 지구의 환경오염문제도 요즈음에 와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

다만, 금세기 들어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의 규모도 급격히 팽창되었고, 이에 따라 지구촌 곳곳에서 산업화와 도시화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결과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특정지역 또는 지구전체의 환경에 오염 현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자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산업화를 가장 먼저 이루한 서구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산업규모의 팽창으로 환경오염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지역적으로는 일반화되었으며, 내용은 복잡해지고, 그 피해는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입법적·사법적·행정적인 노력도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2.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해방 후 새로이 탄생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개발을 통한 국민복지의 향상이었다. 국가적 과제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60년대 이래 외국의 자본도입을 통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에 총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는 수세기에 걸쳐 달성한 경제성장을 30여년에 걸쳐 이룩하는 신화를 낳았다.

반면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았는데 그 중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환경오염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는 경제개발정책과 견주어서 소홀히 해온 환경오염 예방활동의 결과로 도처에서 여려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80년대 초까지도 경제성장에 우위를 두다보니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여겨왔던 오염물질 처리비용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였고, 각종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재도 별로 엄격하지 못했다.

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위환경에 대한 오염피해를 대하는 국민들의 의식도 개인의 사적 소유권 행사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란 수준을

넘어 서지 못했다.

그리고 경제성장 결과 얻어진 소득에 대한 소비문화의 정착과정에서도 관광 및 향락과 관련된 국민들의 놀이생활과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대책수립이나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

이처럼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지속된 오염물질의 대기·물·토양에의 배출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국토의 생태계까지 변화를 가져오는 등 우리나라는 도처에서 산업화와 도시화의 후유증을 심각하게 앓는 중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0년을 "환경원년"으로 선포하고, 각종 오염 현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오염의 각 분야별 개별대책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II. 환경오염규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규제를 중심으로—
환경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양태에는 여러 가지 구분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의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생산과정에서의 오염행위와 소비과정에서의 오염행위로 구분하기도 하고, 오염원의 배출형태를 기준으로 점적오염원과 비점적오염원, 동적인 오염원과 정적인 오염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처럼 오염행위 또는 오염원을 구분하는 이유는 오염양태에 따라서 환경오염을 규제·관리하는 방법이 각기 달라지기 때문이다.

환경행정과 관련하여 처리방법과 오염물질 관리면에서 상당히 축적된 기술을 지니고 있는 분야가 사업장의 오염규제이다. 이를 오염물질의 배출양태로 구분해 본다면 생산과정에서의 점적 및 정적오염원이라 할 수 있다.

사업장은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점적 및 정적오염원이기 때문에 오염규제의 주된 대상이었고, 오염방지 시설의 설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분야이기도 했다.

사업장에 대한 통상적인 규제방법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배출규제에 관하여는

- 배출허용기준
- 규제대상 배출시설
- 규제대상 오염물질

○ 오염물질의 측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오염규제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다만, 3개법은 '91. 2. 2자로 폐지된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부분을 대기, 소음·진동 및 수질의 각 매체 별로 개별법화했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중복되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서로 달라진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이는 각 오염매체의 특성에 맞는 규제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문제점으로 사업장의 오염물질배출규제에 있어서 각 매체의 특성에 맞는 오염규제 방식이 개발되게 되면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라는 문제점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대기편(대기환경보전법)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이러한 배출시설은 시행규칙 별표3을 보면 사업장단위로 규정하지 않고 개개시설을 중심으로, 대상시설과 시설규모에 따라 해당여부를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또한 이 법에 의한 배출시설관련 규제대상사업장이 되느냐 여부는 당해사업장에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 업종 또는 시설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정한 배출시설의 종류를 산업분류기준에 의하여 해당 시설, 규모 및 포함시설로 세분하여(15종 34개 시설에서 51종 181개 시설로) 정했다. (시행규칙 별표3)

—따라서 사업장에 이미 설치된 시설 중 신규로 배출시설에 포함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91.2.2)부터 6월이내에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시행규칙 부칙 제2조)

2. 배출허용기준

가. 배출허용기준의 의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되어 있다.(법제8조제1항)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대허용순간농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기준은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반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며 배출부과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준 결정의 문제는 사업장의 경제적·기술적인 능력 및 국가의 환경오염방지 목격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규제대상오염물질로 수은을 추가하였고 황산화물·황화수소·먼지·암모니아·염화수소·염소·질소산화물·이황화탄소·불소화합물·납·비산먼지 등 16개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강화시킬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이의 적용시점('95년, '99년)을 사전에 예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시행규칙 별표7)

—따라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시설이나 신규로 배출시설에 포함된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방지시설 설치에 특수한 기술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개선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시행규칙 부칙 제3조)

나. 엄격한 또는 특별배출허용기준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안에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새

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특별배출허용기준을 환경처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8조제2항)

이는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총량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강제수단으로, 강화된 기준의 준수가 불가능한 사업장은 자연적으로 이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해 지역의 오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가 줄어 들게 되고, 그 결과 지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는 요건에서 종전에는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만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환경기준의 유지와 관계없이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내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8조제2항)

다. 총량규제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 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9조제1항)

배출허용기준은 오염물질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순간의 농도기준으로 오염원의 수와 규모의 증가에 따른 축적오염으로 인한 위해방지에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완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총량규제란 각 지역의 자연정화능력, 기상, 지형 등을 조사하고 환경용량을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그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제도의 의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처장관

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 제1항)

허가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 전에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지 여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이 법에 위배되어 제재를 받게 되는 데 따른 사업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나. 배출시설의 변경

허가 대상시설을 설치한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10조제2항)

오염물질의 배출규제 수단으로서 허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증설되는 배출시설을 기설치되어 있거나 새로이 설치하려는 방지시설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설치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게 됨에 따라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배출시설의 교체·대체 또는 경미한 증설이나 방지시설의 변경, 매매·상속 및 경락 등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허가절차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변경허가대상의 범위에서 종래 배출시설 20% 이상 증설(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증설은 모든시설)을 50/100이상 증설(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30/100이상 증설)로 완화하고, 고체연료사용승인대상 보일러의 사용연료 및 연료구성비율 변경의 경우와 설치완료신고 전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변경을 변경허가대상에 추가했다.(시행규칙 제12조)

-변경신고대상을 동종·동일규모의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교체·대체, 시설의 양도·양수, 폐쇄 및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 하여 그 대상을 구체화 했

다. (시행규칙 제13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법 제55조)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한

환경처장관은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으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법 제10조제3항) 다만, 대상지역과 배출시설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시행령 제3조)

개별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지라도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개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오염물질 또는 중금속이 함유된 유해물질 등에 의한 축적오염으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된다.

이러한 축적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상수원 상류지역, 공단주변지역 및 인구밀집지역의 중금속유해물질이나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역적·개별적으로 입지를 제한하여 원천적으로 환경 유해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상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을 지라도 국토이용 관리법 등 토지관련법령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거나 건축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가동 중인 공장에서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행위 없이 배출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단순히 시설의 개선을 위한 증설·교체 및 대체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의 배출시설 증설은 인정될 수 없다는 해석이 지역지정제도를 도입한 토지관련 법령의 취지로 보아 타당하다.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만 설치허가를 제한하던 것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하여도 대상지역 및 배출시설의 범위를 고시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법제9조제1항 시행령제3조)

마.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

환경처장관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기술감리단으로 하여금 허가 신청시 제출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에 관한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기술적인 검증을 거치게 함으로써 시설설치 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허가업무의 보조수단이자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인 서어비스의 제공인 것이다.

4. 방지시설의 설치

가. 방지시설 설치의무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사업자)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1조제1항)

이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줄이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지우는 법률상의 부담이다. 간혹, 방지시설을 배출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설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방지시설의 설치 목적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시키는데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다.

나. 방지시설 설치면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및 방지시설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다.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방지시설설치 면제규정 중 제1호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이므로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제1호를 열거한 이유는 시설의 설치전에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행정기관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2호라 할 수 있는 데 총리령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바가 없다.

위 사항과 약간은 차이가 있으나 공업단지 기타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가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개별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종의 방지시설 설치면제에 해당 된다.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책임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시행규칙 제19조)

다. 방지시설 설치면제의 예외규정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특정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을지라도 환경상의 위해정도를 고려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2항)

이는 공기 중에 비산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특성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할지라도 장기간 배출할 경우에는 이로 인한 사업장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이하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시설로써 당해 배출시설 규모의 2배 이상인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규칙 제16조)

라.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방지시설의 설치는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방지시설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방지시설의 설치·변경이나 스스로 설계·시공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 스스로 할 수 있다.(법 제12조)

이는 오염물질의 기준이하 처리에 필수적인 방지시설을 전문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설치하도록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않고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신설·대체 등이나 허가당시의 20퍼센트 이내의 증설·대체 등의 경우(시행규칙 제17조)와 방지시설업자와 동일한 기술능력 및 장비를 갖춘 자가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시행규칙 제18조)에는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용역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완료 및 적합판정

가. 적합판정제도의 의의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15일이내에 신고하고 지정한 기일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후에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도록하고 있다. (법제14조)

설치허가는 서류에 의하여 사전에 이루어지므로 시설 설치에 따른 검사절차없이 바로 조업에 들어 가도록 할 경우 허가받아 설치한 시설이 당초의 설치내역과 달리 설치되거나 시공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가 불가능하게 되면 사업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및 배출부과금 부과 등의 각종 규제조치를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업자의 손실을 방지해 주고 환경오염방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치완료신고, 조사, 시험가동 및 적합판정절차를 두고,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이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가능한 경우에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사용허가(확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시험가동기간 중 정상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하여는 각종 행정규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조업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이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법 제55조)

나. 설치연장, 설치신고 및 적합판정 절차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기간 연장 신청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상의 설치완료예정일 이내에 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상의 설치완료예정일 15일 전에 배출시설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2조제4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완료신고 및 시험가동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완료신고를 하여야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완료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동시설이 허가받은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결과 허가받은 사항과 실제 설치된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보완 후 다시 설치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합될 경우에는 2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험가동을 실시한다. (법 제14조,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3) 시험가동기간의 연장

당초의 기간이내에 충분한 시험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시험가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이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부시설의 경우 시험가동기간 내에 적합판정 결과 정상조업 통보를 받지 못하게 되면 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험가동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다.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험가동과 관련하여

종전 25일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험가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4) 배출시설의 검사

검사수수료는 설치완료 신고시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검사기관(국립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소), 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공단)에게 시험가동기간 내에 오염도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5) 적합판정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증에 판정결과를 기재한 후 정상조업하도록 통보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뒷면에 명시된 부적합 사유를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가. 정상운영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15조제1항)

배출시설설치허가제도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예방적인 성격의 규제수단이라 한다면, 정상운영 의무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사후관리적인 규제 수단으로서 의무부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하다.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법 제55조)

나. 비정상운영의 신고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운영할 수 없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

게 될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15조제4항) 다만, 신고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시행령 제31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변경이나 방지시설의 불시고장 등으로 비정상운영이 부득이한 경우까지 제재를 가하게 되면 개인의 사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의 조업을 전제로 사전에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도록 한 후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 환경오염방지와 사업활동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비정상운영을 사전에 신고한 사업자는 기간 동안의 배출부과금부과를 제외하고는 각종 제재를 받지 않는다. 배출부과금 산정 방법에 있어서도 부과기간은 실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고 신고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기본부과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100/100으로 산정한다.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10조제2항)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 비정상운영신고제도를 종전의 시행령에서 정하던 것을 법률로 정하였고, 신고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개선 하도록 하던 것을 1년6개월(연장 6개월 포함)이내로 개선기간을 제한했다. (법 제15조제4항 시행규칙 제26조)

다. 비정상운영의 적발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하다가 행정기관의 지도·점검과정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제재를 받게 되는 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위 표의 비정상운영의 제재내용을 살펴보면, 신고한 비정상운영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기간 동안의 배출부과금 부과를 제외한 다른 제재사항이 없으나, 적발된 비정상운영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 시설의 결함이나 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개선명

〈비정상운영에 대한 제재내역〉

위반형태 제재종류	자진신고	적발
행정처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경우 -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2년)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1차위반부터 3차 위반까지 개선명령, 4차 위반시 조업정지)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상운영 -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통신)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위반시 조업정지(경고 또는 10일), 2차 위반시 조업정지(10일 또는 30일), 3차 위반시 조업정지(20일 또는 허가취소)
배출부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부과금만 부과 ○ 부과일수(고장신고일부터 개선완료 신고일까지)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0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부과금과 기본부과금을 합산한 금액 ○ 부과일수(사실상의 배출일 또는 검체일부터 개선명령후 완료신고일까지)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05/100
행정벌	없음	고발(100만원 이하의 벌금 : 부득이한 비정상운영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정상운영)

령 및 시설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업정지와 형사처벌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방지시설의 철거·미가동,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불철저 및 오염물질의 누출방지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업자의 의도적인 비정상가동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조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형사처벌 및 비정상가동기간의 배출부과금을 병과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업자의 환경오염방지 노력 및 위반형태에 따라 제재내용을 차등 적용시키려는 취지이다.

7.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행정처분

가.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처분

1) 개선명령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시

설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행정명령(법 제16조)으로, 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곧바로 조업을 정지시키고 시설의 개선을 하도록 할 경우 환경오염방지에는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개인의 사업활동에는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일단은 조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손해를 최소화시키고, 환경오염방지 목적으로 달성하려는 취지이다.

2) 조업정지

가) 시설의 개선과 관련한 조업정지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개선한 시설이 계속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의 행정명령(법 제17조제1항)으로, 이는 일정기간(2년이내) 수차례(3차이상)에 걸쳐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은 당해 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설의 가동을 중지시켜 오염물질의 기준초과 배출의 계속되는 것을 일단 저지해 놓고 결함이 완전히 제거될 때 까지 시설을 개선 또는 교체시키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개선명령을 받고도 개선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으로 하여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다.

조업정지와 관련하여 사업의 성격이 공익과 관계되어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 및 국가의 이익은 보호하되 당해 사업자에게는 조업정지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제재로서 “과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사업의 성격상 조업정지가 어려운 사업자에 대하여 과정금이라는 경제적인 제재를 통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오염 규제의 실효성 확보면에서도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만이 조업정지를 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액수의 차등화, 부과대상 사유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나) 주민의 건강상 위해와 환경상 피해와 관련한 조업정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위해와 환경상 피해가 급박할 때 위해와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시설부터 그 정도에 따라 사용 원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발하는 행정명령(법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28조)으로, 이는 시설의 정상운영과는 별도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급박한 위해의 발생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가하여지는 불이익처분으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러한 행정명령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경보체계 및 지역별 조업정지 대상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하고, 그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조업정지를 당한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최소한도라는 심정적 동의를 얻을 만하여야 한다.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위반과 관련한 조업정지

이 법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명령(법 제20조)으로, 시설의 고장과는 관계없는 의도적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이나 각종 행정명령의 이행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처벌수단이다.

3) 이전명령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사업장의 위치에서는 다른 법령에 저촉되어 방지시설의 개선·증설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특별대책지역안의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오염물질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국민의 건강상 위해와 주변 환경상의 피해방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사업장을 이전시키려는 행정명령(법 제18조, 시행령 제6조)이다.

4) 허가의 취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와 비정상운영한 때에는 행정법에 의하여 처벌하는 외에 허가취소의 행정처분(법 제20조)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이다.

나. 무허가시설에 대한 처분

1) 사용정지 또는 폐쇄명령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5조의 벌칙을 가하는 외에 배출시설 설치가능 지역의 해당여부를 기준으로 사용금지 또는 폐쇄의 행정처분(법 제21조제1항)을 하려는 것이다.

2) 전기·수도의 설치나 공급의 중단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거부할 경우의 제재수단으로 공계약에 의하여 설치되고 공급받는 전기·수도의 중단(법 제21조제2항)을 통하여 무허가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 사용정지 또는 폐쇄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단전, 단수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법 제21조제2항)

8. 배출부과금

가. 배출부과금제도의 의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사실상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9조제1항)

배출부과금제도는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적인 규제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부담인 부과금을 과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이러한 경제적 부담에 대응하여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자발적으로 억제하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특정제품(자동차, 세제, 윤활유, 일회용물품 등)의 생산 및 사용이나 특정 시설(위락시설, 백화점 등)에 대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과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에 대응하여 소비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도록 하려는 오염유발부담금제도가 있다.

이 들은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경제활동과정에 있어서 전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

여 후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담 주체가 서로 다르다.

또한 현행 배출부과금제도는 당해 기준의 준수에 소요되는 오염처리비용외에 기준위반에 대한 정벌의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재화인 환경의 이용자에게 그들이 야기시킨 오염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순수한 의미의 배출부과금 제도와도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연돌자동측정기를 설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오염물질의 양을 산정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식, 즉 순수한 의미의 배출부과금부과방식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었으나 연돌자동측정기의 고장 및 계기의 임의적인 조작에 따른 측정수치상의 신뢰성 확보방안 미비로 시행이 보류되었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되고 기술적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도입해 볼 만하다. 또한, 이 제도가 도입되게되면 사업장의 점검에 소요되는 행정인력의 절감 및 점검 과정에서의 사업자와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고, 사업자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1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처리부과금과는 별도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부과기간에서 검체초일을 제외하던 것을 검체초일을 포함시켜 배출부과금을 산정한다. (시행령 제8조제1항및제9조제5항)

나. 배출부과금제도의 개정내역

'81. 12. 31자 환경보전법 개정법률(법률제3505호)에서 최초로 도입된 배출부과금제도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는 부과금 부과기간 및 부과금액에서 상당히 달라졌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1) 부과기간 산정(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령(1987. 6. 4 대통령령 제12172호)에 반영된 사항 포함)

배출부과금 부과시 기산점을 개선명령일 익일로 하던 것을 검체일로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검체일부터 개선명령일까지의 기간을 부과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실제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을 부과기간에서 제외하게 되는 모순이 있었고, 검체된 시료의 분석에서 개선명령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시설의 개선이나 고장이 아닌 부실한 관리 또는 의도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개선명령일 익일을 부과기간의 초일로 하여 부과금을 산정할 경우 개선명령과 동시에 완료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했음에도 배출부과금 부과가 불가능했다.

또한 행정별로서의 벌금액마저도 소액이고 그 실효성도 미약하여 환경오염방지라는 환경행정목적뿐만아니라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는 소극적인 행정목적 자체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검체일부터 부과금을 기산하는 제도로 바꾸어 배출부과금에 정별적인 성격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변경에 대하여 검체후 즉시 개선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경우에도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배출부과금제도의 성격이 단순히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상응하는 비용징수목적 외에도 부실한 관리 또는 의도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에 대한 정벌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간과한 탓이다.

2) 기본부과금제 도입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처리부과금과는 별도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배출부과금제도의 정별적 요소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채택한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오염물질배출량의 규모에 따른 경제적인 제재내용의 차별화와 시설의 고장등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 무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악취(시행령 제7조)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 배출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를 종래 아황산가스, 먼지, 불소화합물, 악취의 4종에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의 6종을 추가하여 10종으로 하였다. (시행령 제7조)

라. 배출부과금의 종류 및 산정기준

1) 종류

기본부과금과 처리부과금의 둘로 구분된다. (시행령 제8조)

2) 산정기준

기본부과금은 1종 내지 5종의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부과하고, 처리부과금은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배출량과 배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되, 사업장의 규모는 배출시설의 열원으로 사용되는 총연료사용을 무연탄사용량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시행령 별표1내지 별표3)

마. 배출부과금의 조정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나 배출량이 달라진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하거나 또는 신청에 의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위의 조정사유 중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란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하거나 행정기관의 개선명령을 받고 나서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계획서상에 명시된 배출기간과 실제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적발한 후 개선명령을 하기 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했다고 주장하는 사례 등은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의 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배출부과금 부과에 있어서 개선명령전의 부과기간은 징벌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잘 알 수 있다.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 배출부과금의 조정부과에 있어서 직권에 의한 조정 외에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을 추가하

여 조정부과의 범위를 확대했다. (시행령 제13조)

바.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배출부과금 납부대상 사업자가 납기 전에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제14조)

사업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을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하여 사업자의 도산으로 인한 사업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연쇄적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 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여 1년 이내에 6회 또는 3년이내에 12회의 범위안에서 배출부과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4항)

9. 자가측정제도

가. 의의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하였다(법 제22조)

그 이유는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상태를 자체점검하여 시설의 정상운영 또는 개선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의 자가검사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자가측정제도는 본질적으로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사업자의 자기관리에 필요한 보조수단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는 자가측정치를 근거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이를 근거로 행정기관의 오염도검사 결과를 부정할 수 없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가측정결과치에 공신력을 부여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행 자가측정제도와 관련하여 첨언한다면 자가측정의 요건들을 좀더 완화시켜 사업장의 시설

에 대한 운영상태의 자체 점검이라는 자가측정제의 당초 취지만은 살리되 형식적인 제도운영에서 오는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은 줄여 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 측정대행자의 측정

중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부담으로 직접 측정장비를 구입 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하도록 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막중하므로 측정대행자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능력이 있는 측정대행자의 측정대행결과를 사업자의 자가측정에 가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측정대행자제도와 관련하여 측정결과만을 알려 주고 사업장에서는 단순히 이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측정대행자의 업무범위를 사업장의 시설 운영상태를 전반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갖춘 영업의 형태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사업자가 자체 사업장내에 연돌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측정한 항목에 대하여는 자가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다. (시행규칙 별표9)

10. 배출시설관리인

가.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배출시설관리인을 임명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배출시설관리인을 개임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법 제24조제1항)

배출시설관리인이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그에 부수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임명한 자이다.

배출시설관리인제도는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규제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데 그 도입취지가 있다.

배출시설관리인은 보수는 사업자에게서 받고 있지만 수행하는 업무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억제라는 다분히 공적인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볼 때, 공익과 사익의 중간 입장에 있다고 하겠다.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4·5종사업장의 경우 종래에는 배출시설관리인을 사업장의 피고용인 중에서 제한 없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도록 제한하였다. (시행령 별표5)

나. 배출시설관리인의 업무

배출시설관리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24조 2항)

이는 배출시설관리인의 직무범위가 사업장 내에서의 직책과는 별도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지도록 이 법에서 정한 것인 바,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배출시설관리인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술습득 및 행정적인 규제사항의 변경에 항시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다. 사업자의 배출시설관리인에 대한 업무감독

사업자는 배출시설관리인이 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배출시설관리인의 관리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3항)

이는 사업자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감독외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 배출시설관리인 업무의 협조 및 방해 금지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에 대하여는 응하도록 했다. (법 제24조제4항)

이는 당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환경오염방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배출시설 관리인을 공적인 업무수행자의 지위에 가름하도록 했고, 이 규정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배출시설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했다. (법 제58조)

11. 청문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이전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주거환경에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52조)

청문은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이는 행정운영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적법·타당성을 확보해 주고 담당공무원의 재량을 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오며 사업자의 사전적 권리보호를 통하여 행정구제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해 준다.

청문절차를 펼쳐 거치도록 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없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절차상 중요한 위법사항으로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의 청문거부 또는 주소불명, 공익에 관계되는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

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법 제61조)

환경문제의 성격상 사업장의 오염방지책임은 행위자 개인 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인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책임을 지게함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는 행위자 개인의 힘만으로는 위반행위를 회피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기업측에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여 행정상 규제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음·진동편(소음·진동규제법)

1. 소음·진동 배출시설

배출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이 법에 의한 배출시설관련 규제대상공장이 되느냐 여부는 당해 공장에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 배출시설의 범위를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에서 공장에 설치된 시설로 범위를 축소하여 빌딩·상업용건물, 아파트 등에 설치된 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했고, 유압식질곡기는 그 자체를 배출시설대상에서 제외했다. (시행규칙 별표1)

2. 배출허용기준 (법 제8조) [대기편과 동일]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법 제9조제1항)
[대기편과 동일]

나. 배출시설의 변경 (법 제9조제2항)
[대기편과 동일]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대상의 구분을

종전에는 공업지역에 증설되는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기타지역은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시설규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공업지역 및 도시계획법상의 일반공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은 40/100이상 증설하는 경우 기타지역은 20/100이상 증설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및 별표5)

4. 방지시설의 설치

가. 방지시설 설치의무 (법 제10조)

[대기편과 동일]

나. 방지시설 설치면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

법 제10조제1호는 본문의 배출허용기준이하의 오염물질 배출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배출시설 설치의무가 당연히 없는 경우라 하겠고, 실질적으로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동조 제2호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경우이다.

이는 감각공해인 소음의 특성상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공장은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경우로 정한 당해공장의 부지경계선에서 200M이내에 각종 공장, 사업장, 건축물 등이 없는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제1항)는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상당히 축소하고 있는데 당초의 범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듯하여 아쉽다.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진동 배출시

설에 대하여는 모두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공장부지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 공장, 사업장, 건축물 등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지라도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그러나 당해공장이 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거나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생활환경상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다. 방지시설의 설계·시공(법 제11조)

[대기편과 동일]

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완료 및 적합판정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15일이내에 신고하고 지정한 기일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후에 조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 제13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완료 신고접수 후 7일 이내에 동시설의 허가받은 사항과 부합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부합될 경우에는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험가동을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다만,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만이 허가받은 사항과 부합여부를 조사한 후 부합되면 시험가동 및 검사 절차없이 적합판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시설은 시설조사만을 한 후 조업을 통보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가. 정상운영 (법 제14조제1항)

[대기편과 동일]

나. 비정상운영의 적발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 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경우에는 2차에 걸친 조업정지와 허가취소를 하도록 했다.(시행규칙 별표23)

7.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행정처분

가.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처분

- 1) 개선명령(법 제15조) [대기편과 동일]
- 2) 조업정지
 - 가) 시설의 개선과 관련한 조업정지(법 제16조 제1항) [대기편과 동일]
 - 나) 주민의 건강상 위해와 환경상 피해와 관련한 조업정지(법 제16조제2항) [대기편과 동일]
 -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위반과 관련한 조업정지 (법 제18조) [대기편과 동일]
- 3) 이전명령(법 제17조)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공장의 위치에서는 다른 법령이 저촉되어 방지시설의 개선·증설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한 공장이 인근의 주거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시행령 제4조제1항)에 공장 전체를 이전시키려는 행정명령이다.
- 4) 허가의 취소(법 제18조) [대기편과 동일]

나. 무허가시설에 대한 처분

- 1) 사용정지 또는 폐쇄명령(법 제19조제1항)
[대기편과 동일]
- 2) 전기·수도의 설치나 공급의 중단(법 제19조 제2항) [대기편과 동일]

8. 자가측정 (법 제20조) [대기편과 동일]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 소음에 대한 자가측정제도를 도입하여 공업지역 소재 공장은 년1회이상, 기타지역은 반기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소음측정 대행자지정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법 제20조 및 제47조)

9. 배출시설관리인(법 제21조) [대기편과 동일]

10. 청문 (법 제54조) [대기편과 동일]

11. 양벌규정 (법 제62조) [대기편과 동일]

수질편(수질환경보전법)

1. 폐수배출시설

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법 제2조)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 생폐저장시설, 위탁폐수저장시설을 새로이 배출시설의 범위에 포함시켰다.(시행규칙 별표3)
- 따라서 사업장에 이미 설치된 시설중 신규로 배출시설에 포함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규칙 시행일('91. 2. 2)부터 6월이내에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시행규칙부칙제2조)

2. 배출허용기준

가. 배출허용기준(법 제8조제1항) [대기편과 동일]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 BOD, COD, SS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및 이의 적용시점('96년)과 충인, 충질소, 트리클로로에칠렌, 테트라클로로에칠렌의 신설된 배출허용기준 및 이의 적용시점('93년, '96년)을 사전에 예시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했다.(시행규칙 별표5)

나. 엄격한 또는 특별배출허용기준(법 제8조제2항) [대기편과 동일]

다. 총량규제 (법 제9조제1항) [대기편과 동일]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법 제10조제1항)

[대기편과 동일]

나. 배출시설 설치신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가두리식 양어장, 양만장, 일반양어장 및 골프장시설)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6)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법에 규정한 이유는 수질 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지만 허가대상배출시설과 동일하게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여 오염물질을 기준이하로 배출시키기에는 기술적으로 곤란한 시설을 허가대상 배출시설과 다르게 규제하기 위함이다.(시행규칙 별표7)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는 방지시설 설치대신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등을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제도 외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정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1회이상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관리상태 및 주변오염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별표7)

다. 배출시설의 변경

허가대상시설을 설치한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다.(법 제10조제2항) 신고대상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사전에 하고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한 (법 제10조제3항)

[대기편과 동일]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 허가제한대상 지역 및 오염물질의 범위를 종래 상수보호 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서 전지역의 모든 배출시설로 확대했다.(시행령 제3조)

4. 방지시설의 설치

가. 방지시설 설치의무(법 제11조제1항)

[대기편과 동일]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축산농가의 폐수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돈사톱밥 발효시설을 방지시설대상에 포함시켰다.(시행규칙 별표4)

나. 방지시설 설치면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폐수처리업자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폐수를 위탁처리 하는 경우 및 방지시설설치 의의 방법으로 오염물질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법 제11조제1항제1호는 본문의 배출허용기준이 하 오염물질 배출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겠고, 실질적으로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동조 제2호의 규정의 폐수를 위탁처리 하는 경우와 제3호의 규정의 오염물질을 자체 차단된 공정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및 사업자가 해양오염방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폐기물을 반선으로 동법시행규칙 제6조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해역에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는 경우이다.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 폐수수탁제도를 법률로 정하고 위탁대상폐수의 범위에 있어서 동일 사업장내에서 배출되는 여러 종류의 폐수 중 생물화학적처리를 방해하는 성상을 지닌 폐수로서 1일 폐수발생량이 $5m^3$ 이하인 폐수와 기타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폐수를

포함시켰다.(시행규칙 제16조)

다.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법 제12조)
[대기편과 동일]

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완료 및 적합판정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15일이내에 신고하고 지정한 기일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후에 조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법제1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완료 신고접수 후 7일이내에 동시설의 허가받은 사항과 부합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부합될 경우에는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은 50일 이내, 물리적·화학적 처리시설은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험가동을 실시한다.(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다만, 배출시설 변경완료신고를 한 사업자 중 방지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고 기존 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시설이 변경허가 받은 사항과 부합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부합될 때에는 시험가동 및 점사절차없이 적합판정을 통보하되, 적정한 기간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이는 기존의 방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험가동 및 점사절차를 생략하여 기존에 설치된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부과 등 각종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가동이라는 면책기간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배출시설 만을 추가로 설치하여 기존의 방지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설조사만으로 조업을 통보하고 바로 정상가동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가. 정상운영(법 제15조제1항) [대기편과 동일]

나. 비정상운영의 신고 (법 제15조제4항)

[대기편과 동일]

다. 비정상운영의 적발

〈비정상운영에 대한 제재내역〉

위반형태 제재종류	자진신고	적발
행정처분	없음	<p>○신고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2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1차위반부터 3차 위반까지 개선명령, 4차 위반시 조업정지)</p> <p>○비정상운영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통신)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1차 위반시 조업정지(10일 또는 30일), 2차 위반시 조업정지(30일 또는 3개월), 3차 위반시 허가취소)</p>
배출부과금	<p>○처리부과금만 부과</p> <p>○부과일수(고장신고일부터 개선완료신고일까지)</p> <p>○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00/100</p>	<p>○처리부과금과 기본부과금을 합산한 금액</p> <p>○부과일수(배출일 또는 검체일부터 개선명령후 완료신고일까지)</p> <p>○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05/100</p>
행정벌	없음	고발(100만원 이하의 벌금 : 부득이한 비정상운영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정상운영)

위표의 비정상운영의 제재내용을 살펴보면, 신고한 비정상운영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기간 동안의 배출부과금 부과를 제외한 다른 제재사항이 없으나, 적발된 비정상운영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여부를 기준으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합이나 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개선명령, 시설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업정지, 형사처벌 및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고, 방지시설의 철거·미가동, 처리약품의 미투입, 오염물질의 회석배출, 무단배출 및 비밀배출구 설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없거나 사업자의 의도적인 비정상가동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조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형사처벌 및 비정상가동기간 동안의 배출부과금

을 병과하도록 하였다.

7. 배출시설 관련 행정처분

가.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처분

1) 개선명령(법 제16조) [대기편과 동일]

2) 조업정지

가) 시설의 개선과 관련한 조업정지(법 제17조 제1항) [대기편과 동일]

나) 주민의 건강상 위해와 환경상 피해와 관련한 조업정지(법 제17조제2항) [대기편과 동일]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위반과 관련한 조업정지(법 제20조) [대기편과 동일]

3) 이전명령(법 제18조)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사업자의 위치에서는 다른 법령에 저촉되어 방지시설의 개선·증설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특별대책지역 또는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안의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오염물질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국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주변환경상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이전이 필요한 경우(시행령 제8조)에 사업장 전체를 이전 시키려는 행정명령이다.

4) 허가의 취소(법 제20조) [대기편과 동일]

나. 무허가시설에 대한 처분

1) 사용정지 또는 폐쇄명령(법 제21조제1항)

[대기편과 동일]

2) 전기·수도의 설치나 공급의 중단(법 제21조 제2항) [대기편과 동일]

8. 배출부과금

가. 배출부과금제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사실상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9조제1항)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동조동항단서) 이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단위공정 내에

허가받은 시설과 무허가시설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허가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가 법리상 불합리한 점이 있음에도 종전의 규정을 존치시켰다.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검체초일까지를 부과기간에 포함시켜, 무단배출의 경우에도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4항)

나.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유기물질, 부유물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연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동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시행령 제9조)

다. 배출부과금의 종류 및 산정기준

1) 종류(시행령 제10조제1항) [대기편과 동일]

2) 산정기준

기본부과금은 1종 내지 5종의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부과하고, 처리 부과금은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되며, 사업장의 규모는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의 총폐수배출용량(희석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희석수량을,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재이용수량을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시행령 별표1내지별표3)

마. 배출부과금의 조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

[대기편과 동일]

바.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시행령 제16조) [대기편과 동일]

9. 자가측정 (법제22조) [대기편과 동일]

◎ 환경보전법과 달라진 사항

-사업자가 자체사업장 내에 자동측정계기를 설치하여 측정한 항목에 대하여는 자가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다.(시행규칙 별표9)

10. 배출시설관리인 (법 제23조)[대기편과 동일]

11. 청문 (법 제53조)[대기편과 동일]

12. 양벌규정 (법 제60조)[대기편과 동일]

III. 맷음말

오염규제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환경오염규제의 정도는 높아지고, 규제대상의 범위는 더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풍요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용품의 수는 갈수록 더 늘어 나는 데 폐적한 환경욕구 역시 한층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미루어 어쩌면 당연한 사항이라 하겠다.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여건 하에서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은 환경오염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울까?

첫째, 사업장에서 배출시키고 있는 오염물질의 처리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히 환경오염규제를 피하자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방법 뿐아니라 생산공정상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오염물질배출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다.

사업장의 적극적인 환경오염방지활동이 바로 사업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유대를 강

화시켜 주게 되고, 기업의 이미지 재고 및 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판매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경제활동과 환경보전에 대한 균형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환경보전에 대한 기업인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이 사는 환경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도의시한 채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의 물건을 만들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기업활동의 유일한 목표라는 편향된 사고의 지속은 성장의 잠재력 상실은 물론이고 인간의 삶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생산되는 물품은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을 얼마나 윤택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대전환이 전제된 후에야 비로서 환경오염규제의 실효성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자는 물론 우리 모두가 환경오염의 피해자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생산활동과 소비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에 옮겨 나갈 때 환경법에서 정한 규제 내용이 스스로 염중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 소음·진동 규제법
- 환경오염피해조정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발행〉

◎ 환경기술감리표준화(I)

- 〈4×6배판, 557쪽〉
- 금속표면처리시설중 도금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표준화

〈환경처 발행자료〉

◎ 환경기술감리표준화(II)

- 〈4×6배판, 421쪽〉
- 폐기물소각로 설계및 오염물질처리기술
 - 수질오염방지시설설계요령

〈환경처 발행자료〉